

January 20, 2023

## P2E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3.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이 사건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스카이피플(이하 “스카이피플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스카이피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989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현재 게임위는 P2E 게임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습니다<sup>1</sup>.

그동안 게임위의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에 대한 규제는, 해당 게임물들이 i)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ii) 동법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나 iii) 동법 제28조 제2호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및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iv) 동법 제28조 제3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위는 역시 이 사건 게임에 대하여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등을 근거로 등급분류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이 스카이피플사는 게임위의 이 사건 등급분류거부처분이 i) 처분의 사유 자체가 부존재하고, ii)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스카이피플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1 대표적으로 이 사건 게임 외에도, ‘유나의 옷장(플레로게임즈사)’, ‘인피니티 스타(노드브릭사)’,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나트리스사)’ 등 게임 내에서 NFT를 활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 등의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들이 게임위의 등급거부 또는 직권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카이피플사의 주장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사건 게임에서는 i)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NFT화가 가능하고, ii) NFT화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게임아이템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는지 여부는 이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li> <li>이 사건 게임은 i) 주로 시간, 노력, 실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고, ii) 아이템을 얻는 경로가 매우 다양함에도 일부 콘텐츠에 불과한 '24시간 자동모험기능'<sup>2)</sup>에만 천착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li> <li>위와 같은 점 등에서 이 사건 게임은 '사행성'이 존재하지 아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사건 게임의 NFT 아이템은 게임산업법<sup>3)</sup>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경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임</li> <li>경품 제공 행위 이외에도, i) 이 사건 게임의 NFT 아이템의 경우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 ii) 특히 이 사건 게임 내 '24시간 자동모험기능'의 경우 단순히 스테이지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 외에 이용자의 개입을 전혀 요하지 않으므로, 우연적 방법에 기한 결과 취득임을 부정할 수 없음</li> <li>위와 같은 점 등에서 이 사건 게임의 '사행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li> </ul>
형평원칙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게임들에서도 유료 게임머니 등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li> <li>이에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이 NFT화 되어 이 사건 게임 밖에서 해당 NFT를 다른 이용자에게 현금을 대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거래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게임들보다 사행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음</li> <li>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급분류거부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게임물의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 이용 권리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게임에서 제공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NFT가 내재된 아이템의 소유권임</li> <li>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이용 권리를 부여받은 이용자가 이를 임의로 거래하는 것과 NFT라는 기술을 통해 재산적 가치가 내재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이를 거래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음</li> <li>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을 다른 게임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li> </ul>

이번 판결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위가 기존에 고수하던 P2E 게임물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판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위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 이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검토 진행(2019. 11. 8.)’ 및 ‘사행성 및 선정성 관련 자체등급분류 유의사항 안내(2022. 1. 28.)’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들의 게임산업법 위반 가능성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게임위가 가상화폐와 사전, 사후적으로 연계된 게임물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sup>4)</sup>, 문화부와 게임위의 P2E 게임물 전면 금지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여 추후 스카이피플사의 항소를 통하여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2 이는 1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게임 내 특정 스테이지에 대한 모험을 최대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단 이를 한번 실행시키면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을 종료하더라도(즉, 이용자가 전혀 조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24시간 동안 임의의 확률에 따라 아이템 등 게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3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4 시사저널e 2022. 6. 29.자 신문기사: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922>

이 사건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P2E 게임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도 오는 2023. 1. 31.로 예정되어 있는바, 문화부와 게임위의 P2E 게임물 서비스 전면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다른 게임물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

저희 법무법인은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게임 분야 업무에 있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구성원

### 강 태 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 박 주 성

변호사

T 02.3404.6953

E joosung.park@bkl.co.kr

### 선 태 윤

변호사

T 02.3404.1973

E taeyun.sun@bkl.co.kr